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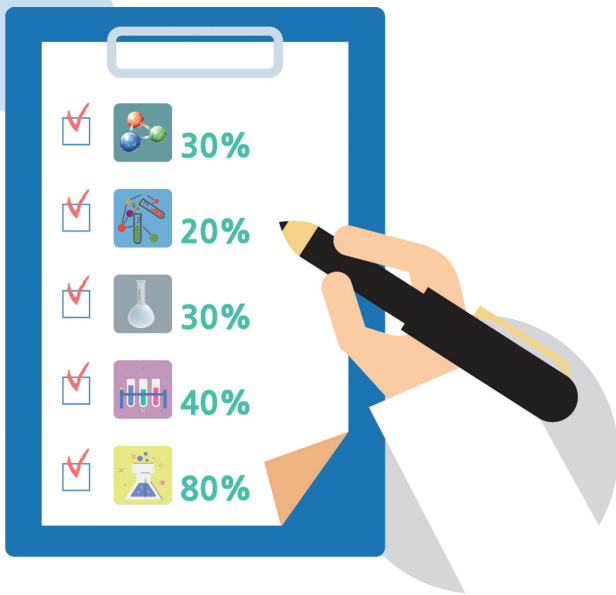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480802-000304-01

더 안전한, 더 행복한,

NICS-GP2021-8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체점검 가이드

National Institute of Chemical Safety



책임운영기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

# Contents

## port 01 자체점검 개요

1. 목적	06
2. 근거	06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구분	07

## port 02 자체점검 계획수립

1. 자체점검 대상	12
2. 자체점검 범위	13
3. 자체점검반 구성	13
4. 자체점검 계획수립	14
5. 자체점검 방법	14





## port 03 자체점검 실시방법

1. 자체점검 실시항목	18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해도	19
3. 화학사고 예방활동의 적절성	24
4. 화학사고 대비활동의 적절성	29
5. 화학사고 내부비상대응계획의 작동성	33
6. 화학사고 외부비상대응계획의 실효성	36

## port 04 자체점검 후 조치 사항

1. 자체점검 후 조치 사항	42
2. 자체점검 결과 작성방법	42
3. 자체점검 결과 제출	43

[표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체점검 결과서	46
----------------------------	----

[표 2] 자체점검 체크 리스트	47
-------------------	----

[표 3] 자체점검 결과 개선사항 조치 내역서	51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체점검 가이드

National Institute of Chemical Safety



# Part 01

## 자체점검 개요

1. 목적
2. 근거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구분

# 01

## 목적

자체점검은 사업장 스스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장 상황에 맞게 변경·운영함으로써 자율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가이드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체점검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함

# 02

## 근거

### ①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2제1항, 제2항

- ① 제23조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주요취급시설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1항제1호

시행규칙 제19조의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등)

- ①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의 점검 방법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서면점검 : 1년 주기

### 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시행규칙 별표 4의 4

#### 4. 사전관리방침

##### 가. 안전관리계획

- 1) 안전관리계획은 안전관리운영계획, 안전관리계획의 실행 및 변경관리,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계획 및 자체점검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5) 자체점검계획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07호) 제22조제5항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안전관리계획)

- ⑤ 자체점검계획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에 대한 자체 확인, 평가와 보완 실시, 제출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① 자체점검****(1) 점검개요**

- 1) 대상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사업장 또는 위해관리계획서 상 자체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적합 받은 사업장  
 ※ 위해관리계획서에 자체점검계획이 수립된 경우 계획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자체점검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 자체점검 가이드에 따라 실시토록 권장함

2) 점검주체 : 사업장 자체 실시

3) 점검주기 : 매년 실시

**(2) 자체점검 결과 제출**

- 1) 제출대상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1군 사업장"으로 적합을 받은 사업장
- 2) 제출주기 : 매년 제출

**② 정기이행점검****(1) 서면점검**

- 1) 대상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사업장
- 2) 점검주체 : 사업장으로부터 자체점검 결과를 제출받아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실시
- 3) 점검주기 : 매년 실시

**(2) 현장점검**

- 1) 대상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중 "가"위험도 사업장
- 2) 점검주체 : 화학물질안전원장
- 3) 점검주기 : 5년 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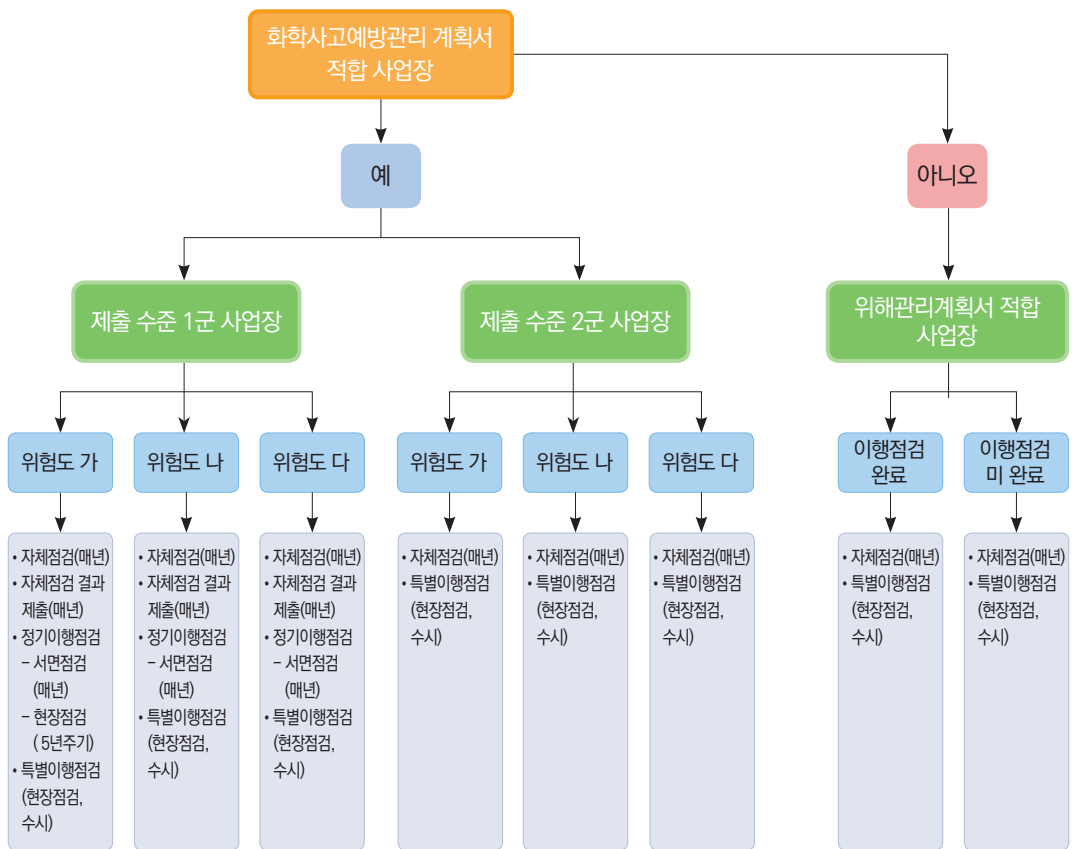
**③ 특별이행점검**

- 1) 대상
  -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중 이행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업장
  - 서면점검 결과, 사업장이 제출한 자체점검 결과가 부실하여 이행점검이 필요한 사업장
  - 화학사고예방을 위해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장

2) 점검주체 : 화학물질안전원장

3) 점검주기 : 수시

※ 기존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적합받지 않은 사업장은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10호)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09호) 부칙 제3조 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점검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특별이행점검에 포함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체점검 가이드

National Institute of Chemical Safety



# Part 02

## 자체점검 계획수립

1. 자체점검 대상
2. 자체점검 범위
3. 자체점검반 구성
4. 자체점검 계획수립
5. 자체점검 방법

## 자체점검 대상

- 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 상 자체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장 스스로 이행 여부를 점검 토록 계획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 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1군 사업장”으로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장은 자체점검 결과를 매년 화학물질 안전원에 제출한다.
- ① ‘2군 사업장’으로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장은 자체점검 결과를 기록·보관하여 특별이행점검 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①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정기이행점검 및 특별이행점검과 사업장 스스로 매년 실시하는 자체점검을 구분 하면 아래와 같다.

### ■ 이행점검 및 자체점검 제출대상 구분

구분	위험도	사업장 실시		화학물질안전원장 실시			
		자체점검	자체점검 결과제출(매년)	정기이행점검		특별이행점검	
				서면점검(매년)	현장점검(6년주기)	현장점검(수시)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	1군	가	●	●	●	●	●
		나, 다	●	●	●	X	●
	2군	가, 나, 다	●	X	X	X	●
위해관리 계획서*	이행점검 완료	-	▲**	X	X	X	●
	이행점검 미완료	-	▲**	X	X	X	●

\* 기존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적합받지 않은 사업장은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8-210호)」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09호)」 부칙 제3조 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점검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특별이행점검에 포함함  
 \*\* 위해관리계획서에 자체점검계획이 수립된 경우 계획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자체점검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 자체점검 가이드에 따라 실시도록 권장함

- ① 시행규칙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이행점검 대상이 된다.
- 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의 큰 특징은 사업장 스스로 자체점검·이행체계를 구축하여 자율적 안전문화가 사업장 내에 정착되도록 하기 위함하므로, 사업장은 책임감을 가지고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자체점검 결과가 부실한 경우 특별이행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

#### 시행규칙 제19조의3제2항

1. 규칙 제19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이때 특별한 조치의 이행여부 확인이란 내·외부 비상대응계획의 이행여부 확인을 말한다.
2. 규칙 제19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
  - 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점검 결과를 검토한 결과 자체점검 결과의 적정성, 개선사항 도출 및 반영계획 이행여부 등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3. 규칙 제19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장.
  - 국가안전대진단이나 화학안전관리에 대한 현안 발생으로 인한 수시점검, 화학사고예방강화를 위해 특정 업종, 공정, 물질 등을 중점 점검하는 경우 등

# 02

## 자체점검 범위

- ① 자체점검은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단위로 실시한다.

[시행규칙 별표 4의 비고 1]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사업장 전체 단위로 작성하며, 사업장의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화학물질안전원장이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운영단위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단위별로 구분하여 제출할 수 있다.

# 03

## 자체점검반 구성

- ① 점검반 구성 시 유의사항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에 대한 사업장 스스로의 점검,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등을 해야 하므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직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한다.
- ① 사업장 현황에 맞게 구성하되, 최소 2인 이상으로 하며, 이 중 1인을 점검반장으로 한다.
- ① 환경안전, 생산, 공무부서 직원 중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운영 및 이행 확인에 적합한 직원으로 구성한다.
- ① 전문가 자문 필요 시, 자체점검반 외에 환경, 화공, 안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나 지역협의체 등을 자체점검에 참여시킬 수 있다.

# 04

## 자체점검 계획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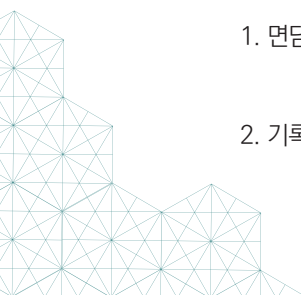
- ① 사업주(공장장)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체점검반을 구성하여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자체점검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체점검 가이드를 참고하되, 필요시 항목별로 강화·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자체점검반은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한 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자체점검 결과를 사업주(공장장)에게 보고한다. 또한 자체점검 결과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 일정 및 보완 내용 등을 포함한 환류계획도 함께 보고하여야 하며, 완료된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공장장) 보고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반영해야 한다.
- ④ 자체점검반 구성 및 자체점검 계획 수립 시기

적합통보일	자체점검반 구성 및 자체점검 계획 수립 시기
1월 1일 ~ 3월 31일(1분기)	적합일로부터 3개월 이내
4월 1일 ~ 6월 30일(2분기)	적합일로부터 3개월 이내
7월 1일 ~ 9월 30일(3분기)	적합일로부터 3개월 이내
10월 1일 ~ 12월 31일(4분기)	적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05

## 자체점검 방법

- ① 자체점검은 사업장 스스로 매년 실시함으로써 자율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되도록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1. 면담 : 사업주(공장장), 부서장, 운전책임자,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방재요원, 안전환경담당자, 협력업체 등에 대한 질의응답
  2. 기록검토: 이행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검토



3. 현장확인: 화학사고 예방·대응과 관련된 안전설비, 통제실 작동성 여부, 응급조치계획의 현장 상황에 따른 실행 가능성 등 확인

① 자체점검은 아래 절차를 적용하여 실시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체점검 가이드

National Institute of Chemical Safety





# Part 03

## 자체점검 실시방법

1. 자체점검 실시항목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해도
3. 화학사고 예방활동의 적절성
4. 화학사고 대비활동의 적절성
5. 화학사고 내부비상대응계획의 작동성
6. 화학사고 외부비상대응계획의 실효성

# 01

## 자체점검 실시항목

- 자체점검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09호)」 제6조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평가항목]을 주요항목으로 하고, 본 가이드 Part3(자체점검 실시 방법)의 내용을 참고하여 실시한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평가항목

구분	항목	연번	세부항목	
1. 사업장 내부 활동	가.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이해도	①	사업주(공장장)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에 대한 이해도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안전환경담당자, 방재요원 등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에 대한 이해도	
	나. 화학사고 예방 활동의 적절성	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자체점검 실시 및 결과 활용	
		②	기본정보, 시설정보 등의 변경사항 기록·보관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반영	
		③	고정식 유해감지시설, 경보시설 등의 점검 및 검·교정 등 유지관리	
		④	안전관리계획 운영 및 사고위험도 감소를 위한 안전성 추가 개선 계획 실행	
	다. 화학사고 대비 활동의 적절성	①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 연간 계획 수립, 결과 보고 및 사후 관리	
		②	확산방지설비 및 방재장비·물품의 유효성	
		③	사업장 내·외부 여건 변화에 따른 공공수용체, 환경수용체 등 주변 환경 변화 여부 확인	
		④	운전책임자 및 작업자, 피해 우려 인원 등의 현황 관리	
	라. 화학사고 내부비상대응 계획의 작동성	①	대표 공정별 응급조치계획의 작동성	
		②	비상연락체계 및 비상대응조직의 적절성 및 현행화	
		③	사업장 내부 비상대피 계획의 적절성	
		④	화학사고 사후조치 계획의 적절성	
	2. 사업장 외부 활동	마. 화학사고 외부비상대응 계획의 실효성	①	비상시 대외소통계획 작동성
			②	평상시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주민간담회, 협의체 등의 운영(참여) 및 활동
③			지역비상대응기관, 인근 사업장과의 공조체계 운영 및 비상연락망 현행화	
④			인근 사업장 및 지역주민 보호·대피 계획의 적절성	
⑤			지역사회 고지 등 지역사회 정보 제공의 적극적 이행 및 실시여부 기록·보관	

## ① 세부 항목

- 사업주(공장장)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에 대한 이해도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안전환경담당자, 방재요원 등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에 대한 이해도

## ① 세부 항목별 점검 방법

### ① 사업주(공장장)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에 대한 이해도

#### (1) 자체점검 시 유의사항

- 사업주(공장장)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의 중요성 인식 여부
-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장 수준에 맞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실천 수준 정도
- 대외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효율적 대응 체계 구축 확인

#### (2) 자체점검 방법

##### 1) 자체점검 절차

- 면담에 의해 실시한다.
- 자체점검 결과를 작성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대책 및 개선계획을 작성하며, 개선이 완료되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반영이 필요한 경우 반영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07호)」 [별지 제2호 서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내역 관리대장]에도 반영한다.

##### 2) 자체점검 내용

- 점검반은 사업주(공장장)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중에서 사전 관리방침의 숙지 여부를 확인한다.
- 내부비상대응계획 및 외부비상대응계획의 숙지 여부를 확인한다.
- 사업부서(생산, 공무 등)간 업무협조 및 상호협력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부서간 업무협조 체계의 개선 및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그 외 아래 사항에 대한 사업주(공장장)의 인식 정도를 확인한다.

### [ 점검항목 예시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의 중요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회사의 기업경영에 있어 환경안전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 안전관리계획(비전, 전략, 목표, 추진계획)은 어떤 관점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셨습니다?
- 사업장의 안전문화 조성(정책)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기업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환경안전 예산의 비율은 어느 정도이며 어떤 사항에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까?
- 지역사회와의 정보공유 및 교류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의 안전관리계획/자체점검 등에 관한 사항은 직접 보고를 받고 업무 지시를 하고 있습니까?
- 사업장 내 화학안전 업무를 전담 조직(인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참고 목차

- 가. 안전관리운영계획 (4-가-1) 참조
- 나. 교육·훈련계획 (4-가-3) 참조
- 다. 내부비상대응계획 (5) 참조
- 라. 외부비상대응계획 (6) 참조

##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안전환경담당자, 방재요원 등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에 대한 이해도

### (1) 자체점검 시 유의사항

- 가. 화학사고 예방, 대비 및 대응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직원들이므로 부서장, 운전책임자,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방재요원, 안전환경담당자, 협력업체 등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내용에 대한 숙지 여부는 필수적임.
- 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상의 담당 업무에 대한 숙지 여부 확인
- 다. 화학사고 대표 사고시나리오 및 응급조치계획 숙지 여부 확인
- 라. 부서간 업무협조 및 상호협력이 원활한지 확인

### (2) 자체점검 방법

#### 1) 자체점검 절차

- 가. 점검반은 부서장(운전책임자),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방재요원, 안전환경담당자, 협력업체 등의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에 대한 이해도 점검을 위하여 아래 점검 항목에 대하여 면담을 통해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 나. 자체점검 결과를 작성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대책 및 개선계획을 작성하며, 개선이 완료되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반영이 필요한 경우 반영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07호)」 [별지 제2호 서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내역 관리대장] 에도 반영한다.

## 2) 자체점검 내용

가. 부서장(운전책임자)의 경우 아래 사항에 대하여 인식 정도 및 숙지여부를 확인한다.

### [ 점검항목 예시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의 중요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까?
- 교육·훈련 계획 수립 시 중점 추진사항은 무엇입니까?
- 교육·훈련 계획 대비 이행에 대한 자체점검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 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환류(만족도 조사, 사후관리 등)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 최근 실시한 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는 각각 어떻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화학사고 발생 시, 본인의 역할 및 임무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최근 진행된 자체점검 결과는 무엇이며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뤄졌습니까?
- 사업장 안전문화 정착·활성화를 위한 중점 추진사항은 무엇입니까?
-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한 직원 참여(인센티브) 방안이 있습니까?
- 사업장 안전문화 활성화를 통한 대표적인 성과가 무엇입니까?
- 해당 공정의 비상 상황 발생 시 가동중지 절차를 잘 알고 있습니까?
- 비상 상황 발생 시 작업자, 협력업체 작업자 등의 인원 파악을 위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우 아래 사항에 대한 인식 정도 및 숙지여부를 확인한다.

### [ 점검항목 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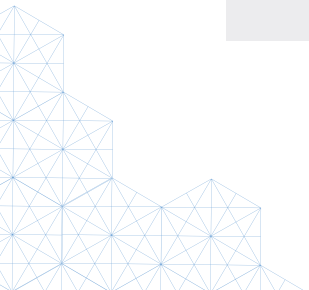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의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은 어디서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 최근 이수한 화학사고 분야 교육·훈련은 어떤 것이며 업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직원 수요조사를 통해 적절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사업장의 교육훈련 지원 수준(상, 중, 하)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취급공정의 비상 상황 시 운전 절차를 알고 있습니까?
- 비상 상황 시 신속한 보고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 사고 발생 시 초기에 실시해야 하는 대처 방법 등 관련 업무는 무엇입니까?
- 본인의 임무 및 역할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해당 부서에서 취급하는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사고시나리오는 무엇이며 영향범위를 알고 있습니까?
-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특성(인화점, ERPG-2, 독성, 발암성 등), 위험성을 알고 있습니까?
- 대표 사고 시나리오(취급물질)에 대한 대응 절차와 방재요령은 무엇입니까?
- 화학사고 유형·규모별 대응 방법과 주·야간별 대응 방법의 차이점을 알고 있습니까?
- 해당 공정에서의 사고시나리오를 숙지하고 있습니까?
- 우수로 등 외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절차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대피체계, 집결지, 대피장소 등을 알고 계십니까?

- 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 해당 부서에서 보유 중인 방재장비(긴급세척시설, 중화제 포함)의 목록 및 수량, 위치를 알고 있습니까?
- 취급공정의 상황별 방재장비 사용 방법 및 개인보호구 사용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 보호장구 점검 및 교체 주기 등을 알고 있습니까?
- 가스감지기, 누액감지기 등 고정식 유해감지시설 작동 방법 및 작동범위를 알고 있습니까?
- 화학사고 발생 시 경보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 화학사고 발생 시(야간 및 공휴일 등의 취약 시간대) 내부 전파 및 신고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 사업장 내 안전문화 구축 및 정착을 위한 추진업무 중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다. 방재요원의 경우 아래 사항에 대한 인식 정도 및 숙지여부를 확인한다.

#### [ 점검항목 예시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의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은 어디서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 최근 이수한 화학사고 분야 교육·훈련은 어떤 것이며 업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 화재·폭발 및 유·누출 사고 훈련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 대표 사고시나리오에 따른 응급조치 계획을 활용한 교육·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직원 수요조사를 통해 적절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사업장의 교육훈련 지원 수준(상, 중, 하)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누출을 초기에 차단하기 위한 봉쇄 장비의 위치 및 활용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 확산 차단 설비의 사용 방법 및 작동 절차를 알고 있습니까?
- 화학사고 발생 유형(형태)은 무엇이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취약한 시간대는 언제인지 알고 있습니까?
- 화학사고 유형·규모별 대응 방법과 주·야간별 대응방법의 차이점을 알고 있습니까?
- 우수로 등 외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절차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비상대응 조직원의 임무 및 역할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유·누출사고와 화재·폭발사고 시 초동대응방법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사고 발생 시 착용해야 하는 적절한 보호장구 종류와 착용법을 숙지하고 있습니까?
- 보유 중인 양압식 공기호흡기 및 화학보호복의 착용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 개인보호구의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안전장치 및 방재시설의 점검 요령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화학사고 발생 시 경보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 화학사고 발생 시(야간 및 공휴일 등의 취약 시간대) 내부 전파 및 신고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 사업장 내 안전문화 구축 및 정착을 위한 추진업무 중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라. 안전환경담당자의 경우 아래 사항에 대한 인식 정도 및 숙지여부를 확인한다.

**[ 점검항목 예시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의 중요성을 알고 계십니까?
- 최근 이수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은 어떤 것이며 업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직원 수요조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사업장의 대표적인 사고시나리오는 무엇이며 영향범위를 알고 있습니까?
- 화학사고 발생 시 방재요령을 알고 있습니까?
- 화학사고 발생 시 대피요령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해당 부서에서 보유 중인 방재장비의 목록 및 위치를 알고 있습니까?
- 취급공정의 상황별 방재장비 사용 방법 및 개인보호구 사용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 보호장구 점검 및 교체 주기 등을 알고 있습니까?
- 화학사고 발생 시 경보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 화학사고 발생 시 내부/외부 전파 및 신고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통제실 내 비치하는 품목 및 자료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주민고지를 하는 취지는 알고 있습니까?
- 야간 및 공휴일 등의 취약 시간대 사고 발생 시 사업장 내부 비상연락체계를 알고 있습니까?
- 인사이동 등으로 인원 변경 시, 비상연락체계 및 비상대응조직을 어떻게 현행화하고 있습니까?
-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까?
- 취급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와 사고 시 이와 관련된 위험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제공받은 개인보호구 또는 특수 화학 보호구를 올바르게 선택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 사업장 내 안전문화 구축 및 정착을 위한 추진업무 중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사업부서(생산, 공무 등) 간 업무협조 및 상호협력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의 변경사항 발생에 따른 이행 과정에서의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마. 협력업체의 경우 아래 사항에 대한 인식 정도 및 숙지여부를 확인한다.

**[ 점검항목 예시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특성(인화점, ERPG-2, 독성, 발암성 등), 위험성을 알고 있습니까?
- 해당 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방재장비 및 개인보호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취급공정의 상황별 방재장비 활용방안 및 개인보호구 착용 기준을 알고 있습니까?
- 취급공정의 비상 상황 시 운전 절차를 알고 있습니까?
- 화학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화학사고 발생 시 내부 전파 및 신고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 기준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대피상황 발생 시 경보 방법 및 집결지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참고 목차

- 가. 안전관리운영계획 (4-가-1) 참조
- 나. 교육·훈련계획 (4-가-3) 참조
- 다. 자체점검계획 (4-가-4) 참조
- 라. 내부비상대응계획 (5) 참조
- 마. 외부비상대응계획 (6) 참조

# 03

## 화학사고 예방활동의 적절성

### ① 세부 항목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자체점검 실시 및 결과 활용
- 기본정보, 시설정보 등의 변경사항 기록·보관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반영
- 고장식 유해감지시설, 경보시설 등의 점검 및 검·교정 등 유지관리
- 안전관리계획 운영 및 사고위험도 감소를 위한 안전성 추가 개선 계획 실행

### ① 세부 항목별 점검 방법

#### 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자체점검 실시 및 결과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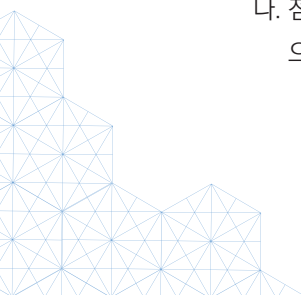
##### (1) 자체점검 시 유의사항

- 가. 사업장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자체점검 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
- 나. 자체점검 계획 수립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개선사항 도출 및 반영의 적절성을 검토

##### (2) 자체점검 방법

###### 1) 자체점검 절차

- 가. 기록검토에 의해 실시한다.
- 나. 점검반은 환경안전, 생산, 공무부서 등 직원 중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운영 및 이행 확인에 적합한 직원으로 구성하였는지 확인한다.





## 2) 자체점검 내용

- 가. 매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대한 자체점검 운영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한다.
- 나. 자체점검 후, 개선결과를 포함한 자체점검 결과에 대하여 사업주(공장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는지 확인한다.
- 다. 자체점검 실시 결과 미흡사항 또는 개선사항에 대한 개선완료 사항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반영이 필요한 경우 반영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07호)」 [별지 제2호 서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내역 관리대장]에도 반영하였는지 확인한다.
- 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내용에 대한 변경 발생 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사본에 반영하였는지 확인한다.
- 마. 변경사항에 대하여 직원에게 전파(홍보)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전파(홍보) 여부를 확인한다.
- 바. 1군 사업장의 경우 자체점검 결과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였는지 확인한다.

##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참고 목차

- 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모든 목차

## ② 기본정보, 시설정보 등의 변경사항 기록·보관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반영

### (1) 자체점검 시 유의사항

- 가. 기본정보, 시설정보 등의 변경은 인허가와 관련되어지므로 철저한 현행화 필요
- 나. 변경사항에 따라, 자체 변경관리, 시설검사, 영업 변경허가(신고), 기재사항 변경 신청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시행규칙 제29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07호)」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288호)」 제4조를 확인하여 인허가 종류를 판단하여 조치

### (2) 자체점검 방법

#### 1) 자체점검 절차

- 가. 기록검토 및 현장확인에 의해 실시한다.
- 나.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내역 관리대장 반영 여부 및 후속 행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한 결과를 확인한다.
- 다. 후속 행정절차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참고할 규정은 아래와 같다.

인허가 종류를 판단하는데 확인해야 할 규정들

- 시행규칙 제29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07호)」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288호)」 제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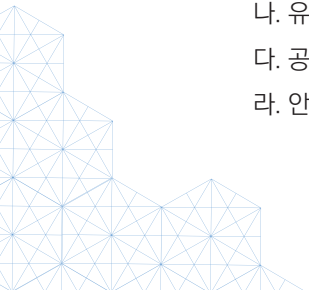
라. 변경사항에 대하여 직원에게 전파(홍보)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을 직원에게 전파(홍보)한다.

## 2) 자체점검 내용

- 가. 작성 수준의 변경 여부 확인 : 시설의 증설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 내의 최대보유량이 변경되고, 작성 수준에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07호)」 [별표1, 최대보유량 산정 방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참고하여 최대 보유량을 재산정하고 작성 수준의 변경 여부를 확인한다.
- 나. 취급시설 개요의 변경 여부 확인 : 공정 조건의 변경 여부, 시설의 변경 여부, 취급 유해화학물질의 변경 여부를 확인한다.
- 다. 유해화학물질의 최대보유량 변경 여부 확인 : 작성 수준의 변경 여부 확인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한다.
- 라.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변동 여부를 확인한다.
- 마. 유해화학물질의 성상, 농도 등의 현행화 여부 확인 :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인 유해화학물질의 함량 증가, 농도 증가, 성상의 변경으로 유해·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이에 대한 현행화 여부를 확인한다.
- 바. 유해성 정보의 최신화 여부 확인 : 공정 조건의 변경 여부, 시설의 변경 여부, 취급 유해화학물질의 변경 여부에 따라서 장외 영향범위, 누출 시 환경영향이 변경되어 종전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상의 사고 유형별 유해성이 큰 대표 2가지 물질(화재·폭발 2가지 물질, 독성 2가지 물질)이 변경되는 경우 현행화 한다.
- 사. MSDS의 최신본 확보 여부 확인 : MSDS 제공처로부터 최신본 여부를 확인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 신규 MSDS를 공급받아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반영한다.
- 아. 유해화학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 정보의 변경으로 인한 후속 행정 절차 해당 여부 확인 및 조치 결과 확인 : 작성 수준의 변경 여부 확인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한다.
- 자. 공정도면 관리 지침 마련 및 도면 관리 부서의 지정 여부를 확인한다.
- 차. 공정도면의 변경 이력을 도면에 기재한다.
- 카. 공정흐름도(PFD)의 최신화 여부 확인 : 공정 조건의 변경 여부, 시설의 변경 여부, 취급 유해화학물질의 변경 여부에 따라서 공정흐름도의 현행화 여부를 확인한다.
- 타. 공정배관계장도(P&ID)의 최신화 여부 확인 : 공정 조건의 변경 여부, 시설의 변경 여부, 취급 유해화학 물질의 변경 여부에 따라서 공정배관계장도 현행화 여부를 확인한다.
- 파. 공정 운전절차서의 현장 비치 여부 및 최신화 여부를 확인한다.
- 하. 취급시설별 또는 공정별 운전책임자 및 작업자 최신화 여부 : 인사 이동, 인원 증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운전 책임자 및 작업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최신화를 실시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상의 담당 업무에 대한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한다.

##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참고 목차

- 가. 사업자 일반정보 (1-가) 참조
- 나. 유해화학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 정보 (1-나) 참조
- 다. 공정안전정보 (2-가) 참조
- 라. 안전관리계획의 실행 및 변경관리 (4-가-2) 참조



## ㉓ 고정식 유해감지시설, 경보시설 등의 점검 및 검·교정 등 유지관리

### (1) 자체점검 시 유의사항

가. 화학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영향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며,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치는 유사 시 정상작동이 되도록 상시 관리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점검 대장 작성 검토

### (2) 자체점검 방법

#### 1) 자체점검 절차

- 가. 기록검토 및 현장확인에 의해 실시한다.
- 나.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내역 관리대장 반영 여부 확인 : 변경사항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반영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07호)」 [별지 제2호 서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내역 관리대장]에도 반영한다.
- 다. 변경사항에 대하여 직원에게 전파(홍보)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을 직원에게 전파(홍보)한다.

#### 2) 자체점검 내용

- 가. 고정식 유해감지시설, 경보시설의 검·교정 실시 여부 확인 : 전문기관으로부터 주기적인 검·교정 실시, 경보설정 값의 적정성 여부 확인 및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 유사 시 정상작동이 되도록 관리하며, 그 기록을 보관한다.
- 나. 안전밸브 및 파열판의 정기적 점검 여부 확인 :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 유사 시 정상작동이 되도록 관리하며, 그 기록을 보관한다.
- 다. 안전밸브 후단 처리설비(스크러버 등)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처리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 유사 시 정상작동이 되도록 관리하며, 점검 대장에 점검 내역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참고 목차

- 가. 고정식 유해감지시설 명세 및 배치도 (2-나-2) 참조
- 나.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2-나-3) 참조
- 다. 배출물질 처리시설 현황 (2-나-4) 참조

## ㉔ 안전관리계획 운영 및 사고위험도 감소를 위한 안전성 추가 개선 계획 실행

### (1) 자체점검 시 유의사항

- 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핵심 내용이며,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전관리방침에서 작성한 사업장의 안전관리계획(비전, 전략, 목표) 수립에 대한 실행 수준을 평가
- 나. 안전관리계획의 실행, 평가, 환류 체계 구축

### (2) 자체점검 방법

#### 1) 자체점검 절차

- 가. 사업주(공장장) 및 안전관리 관련 조직 구성원의 면담 및 기록검토에 의해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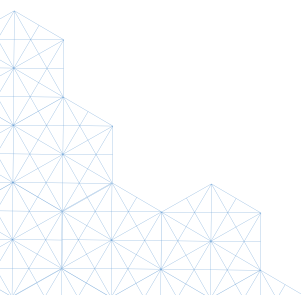
- 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반영한다.
- 다.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내역 관리대장 반영 여부 확인 : 변경사항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반영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07호)」 [별지 제2호 서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내역 관리대장]에도 반영한다.
- 라. 변경사항에 대하여 직원에게 전파(홍보)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을 직원에게 전파(홍보)한다.

## 2) 자체점검 내용

- 가. 사업장에서 수립한 안전관리 운영 계획의 모든 항목에 대하여 점검한다.
- 나. 조직, 인력, 예산의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점검한다.
- 다. 사업장에서 수립한 안전관리 운영 계획이 실제 사업장에서 실행 가능하고 효과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를 점검한다.
- 라. 위험도 평가 시 안전성확보방안을 제출한 사업장의 경우, 사고위험도 감소를 위한 안전성 추가 개선 계획의 실행 여부를 확인한다.

##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참고 목차

- 가. 안전관리운영계획 (4-가-1) 참조
- 나. 안전관리운영계획의 실행 및 변경관리 (4-가-2) 참조



## ① 세부 항목

-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 연간 계획 수립, 결과 보고 및 사후 관리
- 확산방지설비 및 방제장비·물품의 유효성
- 사업장 내·외부 여건 변화에 따른 공공수용체, 환경수용체 등 주변 환경 변화 여부 확인
- 운전책임자 및 작업자, 피해 우려 인원 등의 현황 관리

## ① 세부 항목별 점검 방법

### ①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 연간 계획 수립, 결과 보고 및 사후 관리

#### (1) 자체점검 시 유의사항

가. 화학사고 예방 등 실전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훈련 계획수립 및 실행 충실도를 점검

#### (2) 자체점검 방법

##### 1) 자체점검 절차

가. 기록검토에 의해 실시한다.

나. 자체점검 결과에 대하여 사업주(공장장)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득한다.

다. 자체점검 실시 결과 미흡사항 또는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대책 및 개선계획을 작성하며, 개선이 완료 되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반영이 필요한 경우 반영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07호)」 [별지 제2호 서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내역 관리 대장]에도 반영한다.

라. 변경사항에 대하여 직원에게 전파(홍보)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을 직원에게 전파(홍보)한다.

##### 2) 자체점검 내용

가. 연간 교육훈련 추진 계획 대비 실시 여부를 확인한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법정교육을 포함하여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체계 확립에 필요한 교육, 유관기관간 합동훈련, 응급조치훈련 등 사고예방 및 대응 관련 훈련 포함

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취급담당자, 기술인력 및 관리자, 사업장 종사) 실시 여부를 확인한다.

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 및 이행 담당자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문교육 과정” 실시 여부를 확인한다.

- 라. 비상대응 훈련 시 사고시나리오(화재·폭발, 유·누출사고) 활용 등 훈련 실행 여부를 확인한다.
- 마. 계획대비 전문방제요원 교육·훈련실시 여부율(%)을 파악한다.
- 바. 교육·훈련 평가 및 결과에 대한 환류 실시 여부 확인 : 교육, 훈련 내용에 대한 교육 대상자의 설문 조사 등을 통하여 교육, 훈련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한다.

###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참고 목차

- 가. 교육·훈련 계획 (4-가-3) 참조

## ㉔ 확산방지설비 및 방재장비·물품의 유효성

### (1) 자체점검 시 유의사항

- 가.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 영향 범위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확산방지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
- 나. 근로자 및 전문방제요원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재장비·물품의 정상 작동 여부 등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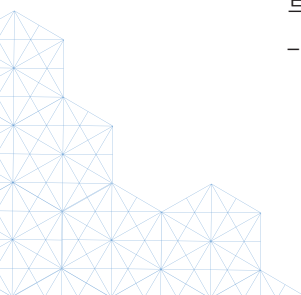
### (2) 자체점검 방법

#### 1) 자체점검 절차

- 가. 기록검토 및 현장확인에 의해 실시한다.
- 나. 자체점검 실시 결과 미흡사항 또는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대책 및 개선계획을 작성하며, 개선이 완료되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반영이 필요한 경우 반영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07호)」 [별지 제2호 서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내역 관리 대장]에도 반영한다.
- 다. 변경사항에 대하여 직원에게 전파(홍보)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을 직원에게 전파(홍보)한다.

#### 2) 자체점검 내용

- 가. 방재장비(물품)의 유효기간을 고려한 주기적 점검·교체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 나. 근로자 및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개인보호장구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 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는지를 점검한다.
- 다. 방재장비(물품)의 보유현황에 대한 현행화 여부를 확인한다.
- 라. 고정식 방재시설(소화설비)의 관리 상태 확인 :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 유사 시 정상작동이 되도록 관리하며, 점검 대장에 점검 내역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 마. 화학사고예방계획에 따른 방재장비(물품) 확충계획의 실행 여부를 확인한다.
- 바. 확산방지 설비(방류벽, 방류턱, 트렌치 등)의 유지관리 적정성 확인 : 배수밸브의 잠금 여부 확인, 방류벽, 트렌치 내 우수 및 모래 등에 의한 폐쇄 여부 확인
  - 환관법 이전 시설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 5 및 관련 하위 규정에 따라 추가 안전방안을 인정한 시설의 해당하는 조치 내용의 정상적인 관리 여부 확인 : 저장시설의 지반조사, 기초공사 및 고정조치, 방류벽



기준 등에 대하여 추가 안전관리 방안으로 인정받은 경우 해당 사항의 주기적 실시 및 점검 여부를 확인하여 기록, 보관한다.

사. 비상통제실 내 방재장비(물품) 비치 및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참고 목차

가. 확산방지설비 현황 및 배치도 (2-나-1) 참조

나. 방재인력·장비·물품 운용 계획 (5-가-2) 참조

## ㉓ 사업장 내·외부 여건 변화에 따른 공공수용체, 환경수용체 등 주변 환경 변화 여부 확인

### (1) 자체점검 시 유의사항

- 가. 주변개발, 신규시설 유입 등 외부 요인에 의하여 공공수용체, 환경수용체 등 주변 환경 정보가 변경된 경우 이에 대한 확인 및 반영 필요
- 나. 운전조건 변경, 시설 증설,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정보 변경 등 내부 요인에 의하여 공공수용체, 환경수용체 등 주변 환경 정보가 변경된 경우 이에 대한 확인 및 반영 필요
- 다. 아래 방법을 활용하여 주변 환경 변화 여부를 확인

- 사업장에서 직접 주변 환경을 주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조사하는 방법(방문조사 등)
- 지자체에 주변 환경 변화에 대해 문의하는 방법
- 통계지리정보서비스(<http://sgis.kostat.go.kr>)를 이용하여 주민수를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방법
- 화학물질안전원 자료실에 업데이트 된 KORA를 이용하여 재검토 하는 방법

### (2) 자체점검 방법

#### 1) 자체점검 절차

- 가. 기록검토 및 현장확인에 의해 실시한다.
- 나. 자체점검 실시 결과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반영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07호)」 [별지 제2호 서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내역 관리대장]에도 반영한다.
- 다. 내부 요인에 의한 변경의 경우, 변경사항에 따라 자체 변경관리, 시설검사, 영업 변경허가(신고), 기재사항 변경 신청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시행규칙 제29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07호)」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 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288호)」 제4조를 확인하여 인허가 종류를 판단하여 조치해야 한다.
- 라. 변경사항에 대하여 직원에게 전파(홍보)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을 직원에게 전파(홍보)한다.

## 2) 자체점검 내용

- 가. 내부 요인에 의한 주변 환경 정보의 변경 여부 확인 : 내부 요인 변경으로 인한 영향범위와 종전의 영향 범위를 비교하여 확인한다.
- 나. 외부 요인에 의한 주변 환경 정보의 변경 여부 확인 : 주변개발, 신규시설 유입 등으로 주변 환경 정보가 변경되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참고 목차

- 가. 주변 환경정보 (1-다-3) 참조
- 나. 사업장 주변 지역 사고영향평가(3-나-1,2) 참조

## ④ 운전책임자 및 작업자, 피해 우려 인원 등의 현황 관리

### (1) 자체점검 시 유의사항

- 가. 가동중지 권한자 및 운전책임자의 지정 및 현행화를 통해 화학사고에 즉각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
- 나. 화학 사고 시 피해 가능성이 있는 작업자를 보호하고 사고 시 대피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관리 및 현행화 필요

### (2) 자체점검 방법

#### 1) 자체점검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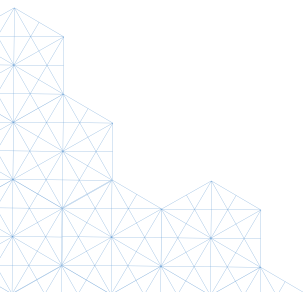
- 가. 기록검토 및 현장확인에 의해 실시한다.
- 나. 자체점검 실시 결과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반영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07호)」 [별지 제2호 서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내역 관리대장]에도 반영한다.
- 다. 변경사항에 대하여 직원에게 전파(홍보)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을 직원에게 전파(홍보)한다.

#### 2) 자체점검 내용

- 가. 비상상황에서의 가동중지 권한 및 절차서 현행화 여부를 확인한다.
- 나. 취급시설의 작업자 및 협력업체 근로자 현황의 현행화 여부를 확인한다.
- 다. 비상상황 발생 시 작업자, 협력업체 작업자 인원파악에 대한 담당자 지정 및 확인 절차 마련 여부를 확인한다.

###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참고 목차

- 가. 화학사고 발생 시 가동중지 권한 및 절차 (5-가-1) 참조





## ① 세부 항목

- 대표 공정별 응급조치계획의 작동성
- 비상연락체계 및 비상대응조직의 적절성 및 현행화
- 사업장 내·외부 비상대피 계획의 적절성
- 화학사고 사후조치 계획의 적절성

## ① 세부 항목별 점검 방법

### ① 대표 공정별 응급조치계획의 작동성

#### (1) 자체점검 시 유의사항

가. 대표 공정별 사고시나리오에 따른 응급조치, 자동차단 또는 단계별 차단, 확산방지를 위한 작동성에 대한 점검

#### (2) 자체점검 방법

##### 1) 자체점검 절차

가. 기록검토 및 현장확인에 의해 실시한다.

나. 자체점검 실시 결과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반영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07호)」[별지 제2호 서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내역 관리대장]에도 반영한다.

다. 변경사항에 대하여 직원에게 전파(홍보)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을 직원에게 전파(홍보)한다.

##### 2) 자체점검 내용

가. 대표 공정별 응급조치계획의 작동성을 점검한다.

나. 대표 공정별 사고시나리오에 따른 자동·수동 차단시스템 운영 매뉴얼 현행화 여부를 확인한다.

다. 자동차단시스템(인터록 시스템 등)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기록, 보관한다.

라. 작업자의 수동밸브 조작방법 및 절차에 대한 숙지 여부를 확인한다.

마. 대표 공정별 확산차단 설비 유효성 확인 및 안전운전 매뉴얼 현행화 여부를 확인한다.

바. 대표 공정별 방재장비(물품) 및 개인보호장비 확보 및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사. 현장에 사고시나리오에 따른 응급조치계획서가 비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참고 목차

가. 사고 시나리오 선정 (3-가-3) 참조

나. 응급조치계획 (5-가-4) 참조

## ㉔ 비상연락체계 및 비상대응조직의 적절성 및 현행화

### (1) 자체점검 시 유의사항

- 가. 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의 정상 작동 여부 및 현행화에 대한 점검
- 나. 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조직의 적절성 및 현행화에 대한 점검
- 다. 비상연락체계 및 비상대응조직의 작동성에 대한 점검

### (2) 자체점검 방법

#### 1) 자체점검 절차

- 가. 기록검토 및 현장확인에 의해 실시한다.
- 나. 자체점검 실시 결과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반영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07호)」 [별지 제2호 서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내역 관리대장]에도 반영한다.
- 다. 변경사항에 대하여 직원에게 전파(홍보)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을 직원에게 전파(홍보)한다.

#### 2) 자체점검 내용

- 가. 비상연락체계 및 비상대응조직의 작동성에 대하여 점검한다.
- 나. 사업장 내·외부 사고신고체계(주간·야간/공휴일 구분) 현행화 여부를 확인 : 비상연락망 가동 훈련을 실시 하고, 소요시간 및 훈련 결과를 사업주(공장장)에게 보고한다.
- 다. 인근업체 및 공조체계를 구축한 해당 사업장 목록 및 연락처, 유관기관 목록 및 연락처의 현행화 여부를 확인한다.
- 라. 사업장 내·외부 사고신고체계(주간·야간/공휴일 구분)의 비치 여부를 확인 : 비상통제실, 시나리오 대상 설비 주변, 운전실 및 협력업체 사무실 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 마. 비상대응조직별 편성인원의 현행화 여부를 확인한다.
- 바. 비상대응조직별 편성인원의 담당 업무에 대한 숙지 여부를 확인한다.
- 사. 협력업체 비상대응조직도 및 임무에 대하여 확인한다(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아. 비상통제실 내 비치 물품의 적절성 및 현행화 여부를 확인한다.

###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참고 목차

- 가. 비상대응체계 (4-나-1~3) 참조

## ㉕ 사업장 내부 비상대피 계획의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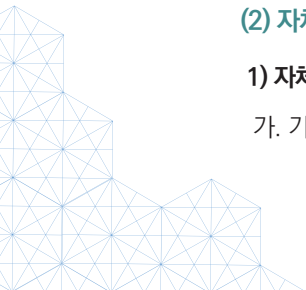
### (1) 자체점검 시 유의사항

- 가. 화학사고 시 사업장내 근로자를 보호하고, 피해 최소화가 가능한 상태로 대피 계획이 운영되고 있는 지에 대한 점검
- 나. 사업장 내부에 비상대피 계획의 작동성에 대한 점검

### (2) 자체점검 방법

#### 1) 자체점검 절차

- 가. 기록검토 및 현장확인에 의해 실시한다.



- 나. 자체점검 실시 결과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반영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07호)」 [별지 제2호 서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내역 관리대장]에도 반영한다.
- 다. 변경사항에 대하여 직원에게 전파(홍보)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을 직원에게 전파(홍보)한다.

## 2) 자체점검 내용

- 가. 사업장 내부 비상대피 계획의 작동성을 점검한다. (해당 시, 공동비상대응계획 점검 포함)
- 나. 보유하고 있는 경보시설의 종류와 수량, 위치, 상황별 경보음에 대한 현행화 여부를 확인한다.
- 다. 경보전달체계 및 경보전달 담당자에 대한 현행화 여부를 확인한다.
- 라. 비상통신, 경보시설, 비상조명, 비상전력에 대한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기록하여 보관한다.
- 마. 사업장에서 지정한 대피장소에 대한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 바. 대피장소의 실제 활용 가능성 여부를 점검한다.

##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참고 목차

- 가. 사업장 내부 경보전달체계 (5-가-3) 참조

## ④ 화학사고 사후조치 계획의 적절성

### (1) 자체점검 시 유의사항

- 가. 화학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고조사체계 운영 여부에 대한 점검
- 나. 신속한 복구 체계 마련 여부에 대한 점검
- 다. 화학사고 사후조치 계획의 작동성에 대한 점검

### (2) 자체점검 방법

#### 1) 자체점검 절차

- 가. 사고조사팀에 대한 면담 및 기록검토에 의해 실시한다.
- 나. 자체점검 실시 결과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반영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07호)」 [별지 제2호 서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내역 관리대장]에도 반영한다.
- 다. 변경사항에 대하여 직원에게 전파(홍보)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을 직원에게 전파(홍보)한다.

#### 2) 자체점검 내용

- 가. 화학사고 사후조치 계획의 작동성에 대하여 점검한다.
- 나. 사고조사팀 구성의 충실도(인력구성, 경력, 전공 등 포함), 인력 변경 시 현행화 실시 여부를 확인한다.
- 다. 사고조사 계획에 따라 도출된 사고원인 분석, 사고 재발방지대책 등에 따른 체계적 후속조치 반영 여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사 실적 확인) 및 사업주(공장장) 보고 여부를 확인한다.
- 라. 사고조사 사내지침(규정)의 현행화 여부를 확인한다.
- 마. 환경복원 전문업체의 사전확보 또는 사전협의 여부를 확인한다.
- 바. 책임보험 가입(보험증권 등) 현행화 여부를 확인한다.

##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참고 목차

- 가. 화학사고 사후조치 (5-나-1, 2) 참조

## 화학사고 외부비상대응계획의 실효성

### ① 세부 항목

- 비상시 대외소통 계획의 작동성
- 평상시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주민간담회, 협의체 등의 운영(참여) 및 활동
- 지역비상대응기관, 인근 사업장과의 공조체계 운영 및 비상연락망 현행화
- 인근 사업장 및 지역주민 보호·대피 계획의 적절성
- 지역사회 고지 등 지역사회 정보 제공의 적극적 이행 및 실시여부 기록·보관

### ① 세부 항목별 점검 방법

#### ① 비상시 대외소통 계획의 작동성

##### (1) 자체점검 시 유의사항

- 가. 비상 시 외부대응기관, 이해당사자 등과의 유기적인 대외소통을 위한 체계의 현행화 및 작동 가능성을 점검  
 나. 외부비상대응계획의 실효성을 위하여 사업장 규모 및 실정에 맞도록 점검하는 것이 중요  
 다. 2군 사업장의 경우 점검항목에서 제외

##### (2) 자체점검 방법

###### 1) 자체점검 절차

- 가. 기록검토에 의해 실시한다.  
 나. 자체점검 실시 결과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반영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07호)」 [별지 제2호 서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내역 관리대장]에도 반영한다.  
 다. 변경사항에 대하여 직원에게 전파(홍보)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을 직원에게 전파(홍보)한다.

###### 2) 자체점검 내용

- 가. 비상 시 대외 소통 체계의 작동성을 점검한다.  
 나. 화학사고 발생 시 사고신고체계(주간·야간/공휴일 구분) 조직·임무 구성 여부 및 현행화 여부를 확인한다.  
 다. 화학사고 발생 시 정보제공을 위한 절차, 비상대응기관(이해관계자) 목록/양식 현행화 여부를 확인한다.  
 라. 대외 정보제공을 위한 보고양식 및 보고장소 등의 지정 및 비치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다.  
 마. 사고발생 시 유관기관에 제공할 정보 항목, 양식, 시기, 방법을 확인한다.

###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참고 목차

가. 화학사고 발생 시 대외소통 계획 (6-가-1-가) 참조

## ㉔ 평상시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주민간담회, 협의체 등의 운영(참여) 및 활동

### (1) 자체점검 시 유의사항

- 가. 지역사회와의 소통 및 정보공유 활성화에 대하여 점검
- 나. 외부비상대응계획의 실효성을 위하여 사업장 규모 및 실정에 맞도록 점검하는 것이 중요

### (2) 자체점검 방법

#### 1) 자체점검 절차

- 가. 기록검토에 의해 실시한다.
- 나. 자체점검 실시 결과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반영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07호)」[별지 제2호 서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내역 관리대장]에도 반영한다.
- 다. 변경사항에 대하여 직원에게 전파(홍보)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을 직원에게 전파(홍보)한다.

#### 2) 자체점검 내용

- 가. 지역협의체 구성 현황 여부를 확인한다.
- 나. 정기적 / 비정기적 지역협의체 교류 실적을 확인한다.
- 다.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운영 및 협의체 참여 실적을 확인한다.
- 라. 사업장 주관 안전문화(캠페인, 모임, 교육 등) 활동 및 지역협의체 참여 실적을 확인한다.

###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참고 목차

가. 평상시 화학사고 예방·대비를 위한 지역사회 소통 계획 (6-가-1-나) 참조

## ㉕ 지역비상대응기관, 인근 사업장과의 공조체계 운영 및 비상연락망 현행화

### (1) 자체점검 시 유의사항

- 가. 화학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공조체계 운영과 비상연락망 현행화 여부에 대하여 점검
- 나. 외부비상대응계획의 실효성을 위하여 사업장 규모 및 실정에 맞도록 점검하는 것이 중요

### (2) 자체점검 방법

#### 1) 자체점검 절차

- 가. 기록검토에 의해 실시한다.
- 나. 자체점검 실시 결과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반영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07호)」[별지 제2호 서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내역 관리대장]에도 반영한다.
- 다. 변경사항에 대하여 직원에게 전파(홍보)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을 직원에게 전파(홍보)한다.

#### 2) 자체점검 내용

- 가. 유관기관 및 인근 사업장 담당자의 비상연락망 현행화 여부를 확인한다.

- 나. 유관기관에 사전정보 제공 여부를 확인한다.
- 다. 지역비상대응기관, 인근 사업장과의 비상대응을 위한 협정 내역 및 실적을 확인한다.
- 라. 방재장비(물품) 공동활용(지원) 등에 관한 상호 협의를 한 경우 그 내역을 확인한다.
- 마. 계획대비 합동훈련 이행 실적을 확인한다.

###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참고 목차

- 가. 지역비상대응기관, 인근 사업장과의 공조체계 (6-가-2) 참조

## ④ 인근 사업장 및 지역주민 보호 · 대피 계획의 적절성

### (1) 자체점검 시 유의사항

- 가. 인근 사업장 및 지역주민에 대한 대피경보 및 전달체계, 주민대피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
- 나. 외부비상대응계획의 실효성을 위하여 사업장 규모 및 실정에 맞도록 점검하는 것이 중요

### (2) 자체점검 방법

#### 1) 자체점검 절차

- 가. 기록검토에 의해 실시한다.
- 나. 자체점검 실시 결과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반영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07호)」 [별지 제2호 서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내역 관리대장]에도 반영한다.
- 다. 변경사항에 대하여 직원에게 전파(홍보)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을 직원에게 전파(홍보)한다.

#### 2) 자체점검 내용

- 가. 대피경보 시스템(시설)의 점검·운영·관리 현황을 확인 : 경보시스템, 비상전원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 하고, 기록, 보관한다.
- 나. 응급의료 및 환자후송 계획의 적절성을 확인 : 응급 의료병원의 연락처에 대한 현행화 여부를 확인한다.
- 다. 대피장소 지정 현황에 대하여 현행화 여부를 확인한다.
- 라. 주민대피 경보전달을 위한 비상연락체계의 현행화 여부를 확인한다.

###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참고 목차

- 가. 주민 보호·대피 계획 (6-나) 참조

## ⑤ 지역사회 고지 등 지역사회 정보 제공의 적극적 이행 및 실시여부 기록 · 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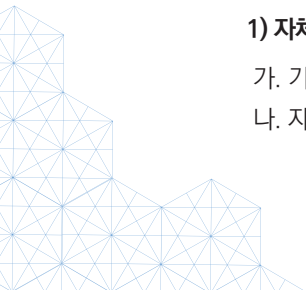
### (1) 자체점검 시 유의사항

- 가. 지역사회에 주민고지, 물질정보, 대피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이행하는지에 대하여 점검
- 나. 외부비상대응계획의 실효성을 위하여 사업장 규모 및 실정에 맞도록 점검하는 것이 중요

### (2) 자체점검 방법

#### 1) 자체점검 절차

- 가. 기록검토에 의해 실시한다.
- 나. 자체점검 실시 결과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반영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07호)「별지 제2호 서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내역 관리대장」에도 반영한다.

다. 변경사항에 대하여 직원에게 전파(홍보)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을 직원에게 전파(홍보)한다.

## 2) 자체점검 내용

가. 지역사회 고지 실시 현황 및 결과(민원 24 포함 추가 방법)를 확인한다.

나. 고지 방법 : 시스템을 통한 고지(필수)와 그 외 고지 방법 1개 이상을 하여야 한다.

- 시스템 고지 : 화관법 민원 24에 등록하며 고지대상 사업장은 모두 해야 한다.

- 그 외 고지방법 : 아래 방법 중 선택하여 실시해야 한다.

- 개별 통지 : 우편, 전자우편
- 개별 설명 : 개별 설명 후 서명 날인
- 집합 전달 : 공청회, 설명회 등
- 기타 고지 : 기초지방자치단체(행정복지센터, 구·군청, 시청 등) 누리집 게시판, 공동주택관리사무소 반상회보, 소식지 게재, 주민대표(이·통장 등) 전달 등

다. 최초 고지 실시 여부를 확인한다.

라. 최초 고지 시기 :

- 시스템 고지 : 적합 후 3개월 이내

- 그 외 고지 : 적합 받은 연도 내 고지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해당 연도가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는 적합 후 6개월 이내 고지 실시

마. 정기 고지 실시 여부를 확인한다.

바. 정기 고지 시기 : 최초 고지한 다음해부터 매년 1회 실시

- 시스템 고지 : 최초 시스템 고지연도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내

- 그 외 고지 : 그 외 고지방법으로 최초 실시한 연도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내 실시

사. 변경 고지 실시 여부를 확인한다.

바. 변경 고지 시기 :

- 변경 제출한 예방계획서에 고지계획(고지내용이 아님)을 변경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

- 고지계획 변경 필요시: 최초 고지 같은 방식으로 실시
- 고지계획 변경 불필요시: 연도 내 고지 여부(정기 고지)에 맞춰 진행
  - ☞ 정기 고지를 실시한 경우: 다음 연도부터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고지 실시,
  - ☞ 정기 고지를 미실시한 경우: 당해 연도 내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고지 실시

- 예방계획서 제출사항이 아닌 경우로서 자체점검결과 고지계획 변경 발생시: 고지 방법, 고지 변경 항목에 따라 다음

- 시스템의 고지를 변경하는 경우
  - ☞ 주민보호·대피 계획 변경시: 안전원의 변경고지 승인 후 1개월 이내 고지
  - ☞ 그 외 사항 변경시: 자체 변경(별도 승인없음)
- 그 외 고지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정기고지 실시여부에 따라 시기조정
  - ☞ 정기 고지를 실시한 경우: 다음 연도부터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고지
  - ☞ 정기 고지를 미실시한 경우: 안 전원의 확인을 받은 날 또는 운영자가 변경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고지

##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참고 목차

가. 지역사회 고지 계획 (6-다) 참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체점검 가이드

National Institute of Chemical Safety





# Part 04

## 자체점검 후 조치 사항

1. 자체점검 후 조치 사항
2. 자체점검 결과 작성방법
3. 자체점검 결과 제출

# 01

## 자체점검 후 조치사항

- ① 자체점검 후 누락된 항목이 없도록 [표2.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자체점검을 확인한다.
- ① 자체점검반은 자체점검 결과서[표1]를 작성하여 사업주(공장장)에게 보고하고, 사업장에 5년 간 보관한다.
- ① 자체점검 결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반영\*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07호)」 [별지 제2호 서식, 화학 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내역 관리대장] 에도 반영한다.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사본을 만들어서 변경이 발생한 사항을 사본에서 교체 및 철하여 관리
- ①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한 후, 자체점검 결과 개선 내역서[표3]를 작성하여 사업주(공장장)에게 보고하고, 사업장에 5년 간 보관한다.
- 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사업장은 자체점검 결과를 매년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 2군 사업장 및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사업장\*은 특별이행점검 시 확인가능토록 5년 간 보관한다.
  - \* 위해관리계획서 상 자체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적합 받은 사업장

# 02

## 자체점검 결과 작성 방법

- ① 자체점검 결과 작성 시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체점검 결과서[표1]** : 사업장의 개요, 자체점검일자, 사업장 대표의 서명, 점검반 및 사업장 확인자의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등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체점검 내용 및 결과[첨부서류] : 아래 5개 항목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적용한 자체점검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작성한다. (아래 예시 참조)
      -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해도에 대한 자체점검 내용 및 결과
      - 2) 화학사고 예방활동의 적절성에 대한 자체점검 내용 및 결과
      - 3) 화학사고 대비활동의 적절성에 대한 자체점검 내용 및 결과
      - 4) 화학사고 내부비상대응계획의 작동성에 대한 자체점검 내용 및 결과
      - 5) 화학사고 외부비상대응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자체점검 내용 및 결과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사항, 책임부서(담당자), 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작성한다.

### 예시

자체점검 항목 중 [3. 화학사고 대비활동의 적절성] 점검 내용

(1) 내부 요인에 의한 주변 환경 정보의 변경 여부 확인

- 종전 적합 판정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대비 공정 조건의 변화(운전조건 변화, 물질 변화, 설비의 변화 등)를 점검하였으며,
- 반응기 1대가 증설된 것으로 파악되었고
- 반응기 1대의 증설로 인한 영향범위를 KORA 프로그램을 통하여 종전의 영향범위와 비교한 결과,
- 영향범위는 확대가 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증설된 시설에 대한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 작성, 설치검사 실시 및 환경청 영업허가 변경신고를 진행하였으며, 변경내역 관리대장에 이력을 기재하였고, 변경 사항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사본에 교체하여 철 하였음

(2) 자체점검 결과 개선사항 조치 내역서[표3] : 개선계획에 따른 조치결과, 조치일자, 책임부서(담당자), 확인자, 서명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03

### 자체점검 결과 제출

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사업장은 아래 제출 시기에 따라 자체점검 결과를 매년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1군, 2군 사업장 및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사업장은 정기이행점검 및 특별이행점검 시 확인이 가능토록 자체점검 결과를 사업장에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1) 적합 통보일별 자체점검 결과 제출 기한

적합통보일	자체점검결과 제출기한
1월 1일 ~ 3월 31일(1분기)	차년도 3월 31일까지
4월 1일 ~ 6월 30일(2분기)	차년도 6월 30일까지
7월 1일 ~ 9월 30일(3분기)	차년도 9월 30일까지
10월 1일 ~ 12월 31일(4분기)	차년도 12월 31일까지

㉠ 자체점검 결과 제출 시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체점검 결과서 : 표 1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체점검 내용 및 결과 : 첨부서류

(2) 자체점검 결과 개선사항 조치 내역서 : [표3]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내역 관리대장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표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체점검 결과서**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자체점검 결과서				
대상 사업장	상호(명칭)		대상 공정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표준산업분류 (업종번호)		영업허가 구분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		
자체점검일자	년 월 일 - 년 월 일			
<p>「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1항제1호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자체점검 결과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사업장 대표</p> <p style="text-align: right;">(서명 또는 인)</p>				
구분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자체점검반				
사업장 확인자				
첨부서류 :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자체점검 내용 및 결과 1부				

## [표 2] 자체점검 체크 리스트

구분	항목	연번	세부항목	자체점검결과 확인할 사항	
				확인할 항목	확인
자체 점검 제출 항목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 자체점검 결과	①	자체점검 결과서(표1) 및 첨부서류 제출 여부	자체점검 결과서 서식과 첨부서류 제출 및 기재사항 작성 여부	
		②	자체점검 결과 개선 내역서(표3) 제출 여부	자체점검 결과 개선 내역서 제출 및 기재사항 작성 여부	
		③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내역 관리대장 제출 여부	변경내역 관리대장 제출 여부	

1. 사업장 내부 활동	가.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이해도	①	사업주(공장장)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에 대한 이해도	사업주(공장장)의 사전관리방침 숙지 여부에 대한 점검 여부	
				사업주(공장장)의 내부 비상대응계획의 숙지 여부에 대한 점검 여부	
				사업주(공장장)의 외부 비상대응계획의 숙지 여부에 대한 점검 여부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안전환경담당자, 방재요원 등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에 대한 이해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내용 숙지 여부에 대한 점검 여부	
				안전환경담당자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내용 숙지 여부에 대한 점검 여부	
				방재요원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내용 숙지 여부에 대한 점검 여부	
				개인보호장구 착용방법의 숙지 여부에 대한 점검 여부	
				화학사고 발생 시 내부/외부 전파 및 신고방법의 숙지 여부에 대한 점검 여부	
				대피상황 발생 시 외부 대피장소에 대한 숙지 여부의 점검 여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상의 담당 업무에 대한 숙지 여부, 개인임무카드 보유 여부에 대한 점검 여부	
				대표 사고시나리오 및 응급조치계획의 숙지 여부에 대한 점검 여부	
				협력업체의 경우 교육 이수 여부, 화학사고 발생 시 내부 전파 및 신고방법의 숙지 여부, 개인보호장구 착용 방법의 숙지 여부, 대피상황 발생 시 집결지에 대한 숙지 여부의 점검 여부[협력업체가 있는 경우]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내역관리대장 반영 여부	

# 체크 리스트를 활용하여 자체점검 시 누락된 항목은 없는지 확인하며, 사업장에 해당 없는 내용은 [확인]란에 해당없음으로 표시한다.

구분	항목	연번	세부항목	자체점검결과 확인할 사항	
				확인할 항목	확인
1. 사업장 내부 활동	나. 화학사고 예방 활동의 적절성	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자체점검 실시 및 결과 활용	자체점검반 구성 여부	
				자체점검 실시 여부	
				자체점검 실시 결과에 대한 사업주(공장장) 보고 여부	
		②	기본정보, 시설정보 등의 변경사항 기록·보관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반영	기본정보의 변경 여부에 대한 점검 여부	
				시설정보의 변경 여부에 대한 점검 여부	
				기본정보 및 시설정보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내역 관리대장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기본정보 및 시설정보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관련 인허가를 진행하였는지 여부(해당 시)	
				공정도면의 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공정흐름도 및 공정배관계장도에 대한 최신화 여부에 대한 점검 여부				
	공정운전절차서의 최신화 여부에 대한 점검 여부				
	나. 화학사고 예방 활동의 적절성	③	고정식 유해감지시설, 경보시설 등의 점검 및 검·교정 등 유지관리	감지/경보기의 정기적인 검교정 실시 여부	
				안전밸브 및 파열판 정기적 점검 여부(해당 시)	
				안전밸브 후단 처리설비(스크러버 등)의 주기적 관리 여부(해당 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 내역 관리대장에 반영 여부(해당 시)	
④		안전관리계획 운영 및 사고위험도 감소를 위한 안전성 추가 개선 계획 실행	사업장에서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의 점검 여부		
			자체점검 실시 결과, 안전관리계획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 변경내역관리대장에 반영 여부		

# 체크 리스트를 활용하여 자체점검 시 누락된 항목은 없는지 확인하며, 사업장에 해당 없는 내용은 [확인]란에 해당없음으로 표시한다.



구분	항목	연번	세부항목	자체점검결과 확인할 사항	
				확인할 항목	확인
다. 화학사고 대비 활동의 적절성		①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 연간 계획 수립, 결과 보고 및 사후 관리	연간 교육, 훈련 추진계획(교육과목, 교육대상, 훈련 등) 대비 실시 여부에 대한 점검 여부	
				비상대응 훈련 시 사고시나리오 활용 여부	
				교육, 훈련 실시 후 사업주(공장장) 보고 여부	
				교육, 훈련 실시 후 개선사항에 대한 직원 교육 여부	
		②	확산방지설비 및 방재장비·물품의 유효성	방재장비(물품)의 주기적인 점검 여부	
				근로자 및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개인보호장구 지급 여부	
				방재장비(물품)의 보유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 여부	
				확산방지설비(방류벽, 트렌치 등)의 주기적인 점검/관리 여부	
				고장식 방재시설(소화설비 등)의 주기적 관리 여부	
				추가 안전방안을 인정받은 시설의 경우 해당하는 조치 내용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방류벽의 CCTV, 감지기 등, 해당시]	
		③	사업장 내·외부 여건 변화에 따른 공공수용체, 환경수용체 등 주변 환경 변화 여부 확인	내부 요인에 의한 주변 환경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자체점검 결과서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외부 요인에 의한 주변 환경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자체점검 결과서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 내역 관리대장에 반영 여부[해당 시]	
				내부 요인에 의한 변경의 경우 관련 인허가(시설 검사, 변경 허가, 변경 신고 등)의 진행 여부를 변경내역 관리대장에 반영하였는지 여부[해당 시]	
		④	운전책임자 및 작업자, 피해 우려 인원 등의 현황 관리	운전책임자 및 작업자의 최신화 여부에 대한 점검 여부	
				비상상황에서의 가동중지 권한 및 절차서 현행화 여부에 대한 점검 여부	
				비상상황 발생 시 작업자, 협력업체 작업자의 인원파악을 담당하는 직원의 지정 여부 및 현행화 여부	

# 체크 리스트를 활용하여 자체점검 시 누락된 항목은 없는지 확인하며, 사업장에 해당 없는 내용은 [확인]란에 해당없음으로 표시한다.

구분	항목	연번	세부항목	자체점검결과 확인할 사항			
				확인할 항목	확인		
1. 사업장 내부 활동	라. 화학사고 내부비상대응 계획의 적절성	①	대표 공정별 응급조치계획의 작동성	대표 공정별 응급조치계획의 현행화 여부에 대한 점검 여부			
				자동차단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점검 여부[해당 시]			
		②	비상연락체계 및 비상대응조직의 적절성 및 현행화	사고 신고체계의 현행화 여부에 대한 점검 여부			
				비상연락망 가동 훈련 실시 여부			
				유관기관 목록 및 연락처의 현행화 여부에 대한 점검 여부			
				비상대응조직 인원의 현행화 여부에 대한 점검 여부			
		③	사업장 내부 비상대피 계획의 적절성	경보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점검 여부			
				경보전달 훈련의 실시 여부			
				비상방송(통신설비)의 주기적 관리 여부			
				비상조명의 주기적 관리 여부			
				비상전력(비상발전기, UPS 등)의 주기적 관리 여부			
		④	화학사고 사후조치 계획의 적절성	사고조사팀의 구성 여부			
				환경복원 전문업체의 현행화에 대한 점검 여부			
				책임보험 가입의 현행화에 대한 점검 여부			
		2. 사업장 외부 활동	마. 화학사고 외부비상대응 계획의 실효성	①	비상시 대외소통 계획의 작동성	신고체계 조직의 현행화에 대한 점검 여부	
						유관기관에 주기적인 정보 제공 여부	
대외 정보 제공을 위한 보고양식 및 보고장소 등의 지정 여부 및 비치 여부에 대한 점검 여부							
②	평상시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주민간담회, 협의체 등의 운영(참여) 및 활동			지역 협의체 교류 실적 제시 여부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운영 실적 제시 여부			
				사업장 주관 안전문화 활동 실적 제시 여부			
③	지역비상대응기관, 인근 사업장과의 공조체계 운영 및 비상연락망 현행화			유관기관 및 인근 사업장 담당자의 비상연락망 현행화에 대한 점검 여부			
				방재장비 공동활용(지원) 등에 관한 상호 협의를 한 경우 해당 내역의 제시 여부[해당 시]			
				계획 대비 합동훈련 실시 여부			
④	인근 사업장 및 지역주민 보호·대피 계획의 적절성			경보시스템, 비상전원의 정상 작동에 대한 점검 여부			
				응급 의료병원 현행화에 대한 점검 여부			
				주민대피 경보전달을 위한 비상연락체계 현행화에 대한 점검 여부			
⑤	지역사회 고지 등 지역사회 정보 제공의 적극적 이행 및 실시여부 기록·보관			지역사회 고지 실시 여부			

# 체크 리스트를 활용하여 자체점검 시 누락된 항목은 없는지 확인하며, 사업장에 해당 없는 내용은 [확인]란에 해당없음으로 표시한다.

### [표 3] 자체점검 결과 개선사항 조치 내역서

번호	자체점검결과 개선사항	조치결과	조치일자	책임부서 (담당자)	확인자	서명
1						
2						
3						
4						
5						
6						
7						
8						
9						
10						

